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36
----------	------

2016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03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1. 제안이유

-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설치·운영기관임이 나타나지 않아 이용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직속기관 명칭 개정(안 제3장제1절부터 제7절까지 및 제10절의 제목,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9조제2항,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36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 토지지번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직속기관 표시에 대한 검토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을 살펴보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기관명칭 앞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아닌 '서울특별

시'로 명기하여 시민들이 동 기관들을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 실제로 '마포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등은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관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평생학습관', '관악구 평생학습관'과 같이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관으로 오인하여 마포구, 노원구 등 해당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¹⁾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교육청 직속기관들의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명기함으로써 동 직속기관들이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교육청이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명기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기관이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번주소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있는 바,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층, 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입니다.²⁾

1) [붙임1] 도서관·평생학습관 민원 현황 참고. 또한 동 개정조례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누리집의 민원사례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도서대출카드가 통합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불편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한 사례가 있다는 점(2016.4.18)에서 서울시 또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도서관 설치·운영이 이원적이라는 것이 이용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도 있음.

2)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지번 주소와의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쓰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든 소재지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안의 도로명주소 변경은 상위법령에 따른 후속적 조치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도로명주소 시행이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향후 교육청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

-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10절(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시설관리사업소’라 함)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시설관리본부’라 함)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는 학교시설의 보수 및 직속기관 환경개선, 사립학교 시설공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200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4332호)에 따라 설립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학교보건진흥원 4층에 임시사업소로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 4월 25일 구)수도여자고등학교로 청사가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³⁾
- 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본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는 혼돈을 주는 기관장 명칭으로 인해 일반공사업체

3)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시설관리와 관련한 직속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4곳임(붙임 참고).

‘현장소장’과 혼란이 발생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장 직급이 3급이라는 점을 들어 ‘소장’보다는 ‘본부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2016.10.4., 교육시설안전과-6717),

시설관리사업소도 교육현장의 시설관리 지원업무 확대에 따른 기구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본부’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2016.10.4., 운영지원과-2510).

- 다만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와 비교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의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장 사업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등 3개의 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⁴⁾ 오히려 사업소가 본부보다 상위의 기관구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볼 때 시설관리사업소의 조직 규모 및 직급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 확대에 따른 조치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시설관리사업소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서울특별시는 이외에도 본청에 8개의 본부를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를 둔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제50조~제52조 (생략)

제2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제53조~제56조 (생략)

제3절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제57조~제60조 (생략)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도서관·평생학습관 민원 현황

- 기 간 : 2016. 1. 1 - 10. 31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 내 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평생학습관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제기한 민원 된 민원

순	날짜	민원접수처	민원내용	비고
1	2016. 4. 22	마포구청	마포평생학습관 열람실 부족	민원이접 사항
2	2016.10.31	마포구청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증축 및 현대화 요구	민원이접 사항
3	2016.4. 19	서울시	대출직원 친절 감사 (고척도서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4	2016.4.27	서울시	타 시·도 시민에게도 대출요망 (동대문도서관)	"
5	2016.5.14	서울시	휴관일 축소 요망 (양천도서관)	"
6	2016.5. 31	서울시	타 시·도 시민에게도 대출요망 (동작도서관)	"
7	2016.6. 10	서울시	도서관 무선인터넷 증설 요청 (동대문도서관)	"

[붙임2]

사·도교육청별 시설관리 전담 직속기관의 설치 현황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기준)

교육청	시설관리 전담 직속기관 설치 여부	명칭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부산	X	-
인천	X	-
대구	X	-
광주	○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대전	X	-
울산	X	-
세종	X	-
경기도	X	-
강원도	X	-
충청북도	X	-
충청남도	X	-
전라북도	X	-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경상북도	X	-
경상남도	○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
제주도	X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회현동1가 100번지의 177호” 를 “소파로 46 (회현동1가)” 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봉천동 238번지” 를 “낙성대로 101 (봉천동)” 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방배3동 630번지” 를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 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행현리 산136번지” 를 “축령로45번길 40-135” 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직동 1-27번지”를 “사직로9길 15-8 (사직동)”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로2가 2번지 64호”를 “송월길 48 (신문로2가)”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잠실동 10번지 3호”를 “올림픽로 25 (잠실동)”으로 한다.

제3장제10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하고, “후암동 168번지”를 “두텁바위로 27 (후암동)”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소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을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으로 한다.

제41조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

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분원의 명칭·위치(제12조의5 관련)

분관명	소재지
남산분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동부분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3길 20 (면목동)
남부분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21 (구로동)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가평영어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희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656 (호평동)

[별표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분관의 명칭·위치(제28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강서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0 (신월동)

[별표 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제30조제2항 관련)

평생학습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2길 16 (서교동)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길 13 (중계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5 (고덕동)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0 (당산동)

[별표 5]

평생학습관 분관의 명칭·위치(제33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24 (아현동)

[별표 6]

도서관의 명칭·위치(제35조제2항 관련)

도서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화동)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14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7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도봉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556 (쌍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삼성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나길 29 (등촌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4길 30 (개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57 (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15 (구로동)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연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5길 31 (고척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노량진동)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63 (오금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 -----.	제4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
제1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제1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자료 개발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u> (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u>회현동1가 100번지의 177호</u> 에 둔다.	제10조(설치) ①----- ----- ----- -----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u> -----. ②----- -- <u>소파로 46 (회현동1가)</u> ----- --.
제2절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u> (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u>봉천동 238번지</u> 에 둔다.	제12조의2(설치) ①----- ----- ----- ----- <u>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u> -----. ②----- <u>낙성대로 101 (봉천동)</u> -----.
제3절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제3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u>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u> (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u>방배3동 630번지</u> 에 둔다.	제13조(설치) ①----- ----- ----- ----- ----- -----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u> -----. ②----- <u>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u> -----.
제4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제4절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생활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u>서울특별시 학생</u>	제17조(설치) ①----- ----- ----- ----- ----- <u>서</u>

<p><u>교육원</u>(이하 “<u>학생교육원</u>” 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u>학생교육원</u>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u>행현리 산 136번지</u>에 둔다.</p>	<p><u>울 특별 시 교 육 청 학 생 교 육 원</u> -----.</p> <p>②----- <u>축령로45번길 40-135</u>-----.</p>
<p>제5절 <u>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u></p>	<p>제5절 <u>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u></p>
<p>제20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u>유아교육법</u>」 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u>(이하“<u>유아교육진흥원</u>” 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u>유아교육진흥원</u>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u>사직동 1-27번지</u>에 둔다.</p>	<p>제20조의2(설치) ①----- ----- ----- ----- <u>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u>----- -----.</p> <p>②----- -- <u>사직로9길 15-8 (사직동)</u>-----.</p>
<p>제6절 <u>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u></p>	<p>제6절 <u>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u></p>
<p>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u>(이하 “<u>학교보건진흥원</u>” 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u>학교보건진흥원</u>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u>신문로 2가 2번지 64호</u>에 둔다.</p>	<p>제21조(설치) ①----- ----- ----- <u>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u> ----- -----.</p> <p>②----- -- <u>송월길 48 (신문로2가)</u>-----.</p>
<p>제7절 <u>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u></p>	<p>제7절 <u>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u></p>
<p>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u>(이하 “<u>학생체육관</u>” 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u>학생체육관</u>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u>잠실동 10번지 3호</u>에 둔다.</p>	<p>제25조(설치) ① ----- ----- <u>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u> -----.</p> <p>②----- <u>올림픽로 25 (잠실동)</u>-----.</p>
<p>제10절 <u>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u></p>	<p>제10절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u></p>
<p>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u>(이하 “<u>교육시설관리사업소</u>” 라 한다)를 둔다.</p> <p>② <u>교육시설관리사업소</u>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u>후암동 168번지</u>에 둔다.</p>	<p>제39조(설치) ①----- ----- -----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u> (이하 “<u>교육시설관리본부</u>” -----.</p> <p>② <u>교육시설관리본부</u>----- <u>두텁바위로 27 (후암동)</u>-----.</p>
<p>제40조(소장) <u>교육시설관리사업소</u>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0조(본부장) <u>교육시설관리본부</u>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 -----</p>

	-----.
<p>제41조(업무) <u>교육시설관리사업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41조(업무) <u>교육시설관리본부</u>-----</p> <p>-----.</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p> <p>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p> <p>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로 한다.</p> <p>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p> <p>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학전시관 분관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의5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분관의 명칭·위치(제12조의5 관련)

분관명	소재지	비고
남산분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177	
동부분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380	
남부분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43	

분관명	소재지
남산분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동부분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3길 20 (면목동)
남부분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21 (구로동)

[별표 2]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비고
분원	가평영어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1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585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055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 279-4	
야외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1-1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가평영어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후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656 (호평동)

현 행

[별표 3]
학생체육관 분관의 명칭·위치(제28조 관련)

분원명	소재지	비고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6-7	

[별표 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제30조제2항 관련)

평생학습관명	소재지	비고
마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1-1	
노원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8	
고덕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6	
영등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2	

[별표 5]
평생학습관 분관의 명칭·위치(제33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비고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02-1	

[별표 6]
도서관의 명칭·위치(제35조제2항 관련)

개 정 안

[별표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분관의 명칭·위치(제28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강서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0 (신월동)

[별표 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제30조제2항 관련)

평생학습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2길 16 (서교동)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길 13 (중계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5 (고덕동)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0 (당산동)

[별표 5]
평생학습관 분관의 명칭·위치(제33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24 (아현동)

[별표 6]

현 행

도 서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2	
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1-28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84	
동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9-4	
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용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90	
도봉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22-163	
강남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8	
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산25-31	
개포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	
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2	
구로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6-1	
서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116	
고척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9-14	
양천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5	
동작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310-150	
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1	

개 정 안

도서관의 명칭·위치(제35조제2항 관련)

도 서 관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화동)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14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7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도봉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556 (쌍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삼성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나길 29 (등촌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4길 30 (개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57 (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15 (구로동)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연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5길 31 (고척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노량진동)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63 (오금동)